



고용노동부

고용노동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코로나19」 예방 및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(사업장용, 2단계) 안내

1. 관련

- 가. 산업보건과-1356('20.03.23) 「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(사업장용) 안내」
- 나. 산업보건과-1870('20.04.23) 「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 이행을 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(사업장용, 2단계) 안내」

- 2. 코로나19의 장기적 유행에 대응한 생활방역체계 전환의 전단계로 기 공표('20.3.23)한 「코로나19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(사업장용,1단계)」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2단계 지침(수정내용 빨간색 표시)을 붙임과 같이 마련·배포하오니 업무 참고 및 사업장 안내·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* 각 기관 홈페이지에 2단계 지침 게시 및 상담 시 안내

붙임 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(2단계). 끝.

고용노동부장관

수신자 지방관서(지역협력부서), 제주특별자치도(일자리과),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, 한국고용정보원장,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, 외국인력상담센터장



주무관 이동하 행정사무관 최난주 외국인력담당관 전결 2020. 4. 23.

협조자

시행 외국인력담당관-1281 (2020. 4. 23.) 접수

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(어진동 581 고용노동부) 7층 / www.moel.go.kr
외국인력담당관실

전화번호 044-202-7150 팩스번호 044-202-8027 / merseum@korea.kr / 비공개(5)